

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창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
번호 1960

발의년월일 : 2017년 8월 11일

발 의 자 : 김창수, 김인호, 김제리, 김혜련,
박마루, 서윤기, 성백진, 유광상,
진두생, 황준환, 유 용 의원
(11명)

1. 제안이유

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와 승인을 하는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며, 잘못된 약어를 바르게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소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. (안 제2조제2호)

나.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약어를 시의원으로 한다.(안 제2조제2항)

다. 시의원의 임기는 시의원의 임기 내 및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으로 한다.
(안 제4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직자윤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시의회 의원”을 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인 의원 (이하 ‘시의원’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,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시의회의원”을 “시의원”으로 하고, “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”를 “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4명의 위원은 <u>시의회 의원</u> 2명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</p> <p>② <u>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시의회”이라 한다)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,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위원으로 한다.</p> <p>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</p>	<p>제2조(구성) ① < 현행과 같음 ></p> <p>1. < 현행과 같음 ></p> <p>2. ----- <u>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인 의원(이하 ‘시의원’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< 삭 제 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

제4조(임기) ① (생략)

② 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
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
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회의원
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,
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
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
다.

제4조(임기) ① < 현행과 같음 >

② 시의원 -----

----- 시의원인
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소
속 기간 내로 -----

--.